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연방 정부,
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두만강에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
공화국과 로씨야연방,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접촉점에 관한
서 술 의 정 서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연방 정부, 중화인
민공화국 정부(아래부터는 체약당사자들이라고 한다)는 1998
년 11월 3일부 《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연방
정부,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두만강에서의 3 개국 국경
수역 경계선확정에 관한 협정》(아래부터는 경계선협정이라
고 한다)에 따라 두만강(두만나야, 도문강)에서의 3 개국 국
경접촉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이 서술의정서를 체결한다.

제 1 조

두만강에서의 3 개국 국경접촉점은 3 개국 국경수역경계선
(아래부터는 경계선이라고 한다)이 강중심선과 교차되는곳에
있다.

강중심선과 3 개국 국경접촉점은 2001 년 8 월 수위 1.14m
때 정하였다.

3 개국 국경접촉점의 자리표는 다음과 같다.

지리자리표 북위 $B = 42^{\circ} 25' 04.7''$

동경 $L = 130^{\circ} 38' 11.9''$

직각자리표 $X = 4699046.1$

$Y = -112216.0$

현존하는 해당 조로, 로중 국경조약들에 따라 그리고 두만
강의 3 개국 국경접촉점지역에서 생긴 자연적인 변화들과 관
련하여 이 서술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이 서술의정서
의 《강중심선》이란 표현은 경제선협정 제 1 조의 《강주류
의 중심선》이란 표현을 대신한다.

제 2 조

3 개국 국경접촉점과 경계선은 두만강 량측기슭의 경계선
연장선들에 세운 제 1, 2, 3 호 표식물들에 의하여 현지에 표시
되어 있다.

제 1 호 표식물은 두만강 좌측기슭에 있는 로중국경 제 423 호 국경표말이다.

제 1 호 표식물의 자리표와 높이는 다음과 같다.

자리자리표 북위 B = $42^{\circ} 25' 10.2''$

동경 L = $130^{\circ} 38' 17.7''$

직각자리표 X = 4699214.0

Y = -112080.6

높 이 6.0m

제 1 호 표식물로부터 3 개국 국경접촉점까지의 거리는 215.7m 이다.

제 2 호 표식물은 두만강 우측기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토에 세워져있다.

제 2 호 표식물의 자리표와 높이는 다음과 같다.

지리자리표 북위 B = $42^{\circ} 24' 59.5''$

동경 L = $130^{\circ} 38' 06.5''$

직각자리표 X = 4698890.5

Y = -112341.5

높 이 6.7m

제 2 호 표식물로부터 3 개국 국경접촉점까지의 거리는 200.0m 이다.

제 3 호 표식물은 두만강 좌측기슭 로씨야련방의 령토에 세워져있다.

제 3 호 표식물의 자리표와 높이는 다음과 같다.

지리자리표 북위 B = 42° 25' 13.2"

 동경 L = 130° 38' 20.9"

직각자리표 X = 4699306.6

 Y = -112005.9

높 이 10.6m

제 3 호 표식물로부터 3 개국 국경접촉점까지의 거리는 334.7m 이다.

3 개국 국경접촉점의 자리표, 제 1, 2, 3 호 표식물들의 자리표와 높이는 현지에서 기계로 확정하였으며 그것들에 대한 측정에서 평면편차는 $\pm 2m$ 를, 높이 편차는 $\pm 0.5m$ 넘지 않는다.

3 개국 국경접촉점과 제 1, 2, 3 호 표식물들의 자리표는 평양자리표체계(3° 대)를, 높이는 조선의 동쪽바다면을 기준으로 하였다.

제 3 조

3 개국 국경접촉점에는 국경 표식물을 설치하지 않았다.

제 4 조

두만강에서 그 어떤 자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도 3 개국국경접촉점의 위치는 계약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.

3 개국 국경접촉점의 위치에 대한 공동조사는 10 년에 한 번씩 진행한다.

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조사진행기간은 변경될수 있다

계약당사자들은 조사를 위하여 조, 로, 중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.

제 5 조

계약당사자들은 이 서술의정서의 부록으로 되는 줄임 1:5000 의 《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,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접촉점지역도》를 작성하였다.

이 지도에서 3 개국 국경접촉점의 위치는 그 지리자리표가 표시된 두개의 붉은 원형으로, 경계선은 붉은 실선으로, 량쪽 기슭에서 경계선의 연장선들은 붉은 점선으로, 제 1, 2, 3 호 표시물들의 위치는 붉은 원형으로 표시되어 있다.

이 지도에서 3 개국의 국경들은 표시되지 않았다.

제 6 조

채약당사자들은 이 서술의정서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국내
법적절차를 끝낸 다음 호상 시면으로 통보한다.

이 서술의정서는 마지막 서면통지를 보낸 날부터 30 일이
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이 서술의정서는 2002 년 6 월 20 일 베이징에서 조인되었으
며 조선어와 토어,중어로 각각 3 부씩 작성된 이 세 원본은 같
은 효력을 가진다.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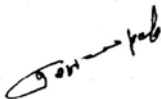
로씨아연방 정부의

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

정부의 위임에 의하여

위임에 의하여

위임에 의하여



王光亚